

전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3696(본소) 판결 [(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29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13696 판결

전 문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대 337㎡ 중 2/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11. 2. 접수

제1203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대 507㎡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11. 2. 접수 제12030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종중의 종원인 C은 원고 종중을 상대로 ‘원고 종중이 2016. 10. 1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E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합3996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7나11921호},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 종중은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이 C을 대표자로 선출한 2018. 11. 11.자 원고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C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2018. 11. 11. 원고 종중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C이 선출되었으므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2018. 11. 11.(일요일)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 11명의 만장일치로 C을 원고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 및 소유권 반환 또는 이후 매매 등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8. 11. 11.이 원고 종중의 2018년도 정기총회일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그 종중규약 제12조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4월 5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에 또는 종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갑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종중규약이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 시제사 후 이어서 즉시 소집한다(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원고 종중이 약 30년 전부터 원고 종중 시제를 가을 시제로 변경하고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 종중 주장과 같은 내용의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은 ‘2018. 11. 17.’이므로, 2018. 11. 11.자 총회는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2018. 11. 11.자 총회를 임시총회라고 보더라도 원고 종중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2018. 11. 11.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C 선임결의를 포함한 모든 결의는 무효이다.

3) 또한, 2018. 11. 11.자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인 이상 2018. 11. 11.자 총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종중규약{즉,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 시제사 후 이어서 즉시 소집한다(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기하여 개최되어 2018. 11. 11.자 총회에서의 결의를 추인하는 취지의 2019. 11. 19.자 총회에서의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C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C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